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5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강릉시 의회 의장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 지급(안 제4조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수당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지원사업)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수당 지급</u></p>